



쓰레기수거차량 적재함에서 추락



환경미화원이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해 수거운반차량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통신 케이블에 머리가 걸려 높이 2.6m의 차량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사망



발생 원인

- 추락위험 장소에 탑승
 - 추락위험이 있는 적재함에 탑승한 채 이동하다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에 걸려 추락
- 안전모 미착용

TIP

안전작업

- 1 청소차량 승차석 이외에 탑승 금지**
 -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청소차량 적재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, 근거리는 도보로 이동하고 원거리 이동 시에는 운전실 내부 승차석에 탑승
- 2 개인보호구 착용**
 - 쓰레기 수거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후 작업 실시



승차석에 탑승



개인보호구 착용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 (주용도 외 사용제한)





쓰레기수거차량 적재함에서 추락

청소차량의 승차석 외에는 탑승하지 마세요!

